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부위원회
1994. 6. 24.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6월 16일

. 회부일자 : 1994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 103 회 임시회

. 제 1 차 내부위원회 (1994. 6. 2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으로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 읍면동장에 준하는 증평출장소 지소장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증평출장소의 지소장을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우 병 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장에 준하는 증평출장소 지소장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조례에 있어서 지소장에 대하여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던것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종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 7인)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